

■ 항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4.>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흥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